

#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9,788,222	17,693,647
일반회계	511,864,352	15,355,931
특별회계	77,923,870	2,337,716
공기업특별회계	46,896,766	1,406,903
상수도사업	12,032,031	360,961
하수도사업	34,864,735	1,045,942
기타특별회계	31,027,104	930,813
의료급여기금	1,938,482	58,154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111,222	3,33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75,939	2,278
농공지구조성	4,776,386	143,292
중소기업육성자금	5,713,361	171,4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87,406	35,622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11,836	6,35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70,292	8,109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3,142,570	94,277
수질개선관리	5,295,301	158,859
보건진료	1,950,351	58,511
농업발전기금	6,353,958	190,6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01,359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4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